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농어촌 교육지원 확대 등〉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8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의 필요성	4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7
2. 주요 조문별 검토	8
가. 실태조사 및 추진체계 설치(안 제7조~제9조, 제15조)	8
나. 학교의 설치·운영(안 제10조)	12
다. 공동학생통학구역 및 교육과정 운영(안 제11조~제12조)	15
라. 농어촌자율학교의 운영(안 제13조)	17
마. 방과후 학교 등(안 제14조)	19
바. 교부금 특별지원(안 제16조)	21
사. 학급담당교원 배치 등(안 제17조~제18조)	23
아. 농어촌학교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안 제21조~제24조)	27
자. 조세감면 등(안 제26조)	30
※ 참고자료	
- 초·중·고 신설학교 설립 기준 및 절차	3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7.

다. 회 부 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갈수록 진전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화로 우리 농어업·농어촌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교육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으로 도시지역의 교육여건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심화되는 교육 양극화를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이에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 육성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교원·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두어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농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은 인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어촌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농어촌 학교는 농어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지역 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농어촌 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에 대하여 대학입학특별전형, 공무원 임용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아.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부모 및 교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IV.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의 필요성

농어촌 발전 정책의 총괄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농어촌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개발 촉진에 관한 규정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이 제정됨.

그러나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농어촌의 학생수를 감소하게 하여 농어촌 폐교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농어촌 교육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삶의질법과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법안은 농어업인삶의질법상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제4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¹⁾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임.

농어촌은 교육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여 농어촌 폐교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귀농 또는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 제정안 부칙에서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4장 중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있음.

다만,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첫째, 동일 목적의 농어업인삶의질법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고, 둘째, 제정안 규정 중 상당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이미 다른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안 제13조 농어촌자율학교의 운영²⁾, 안 제25조 폐교³⁾ 등),

셋째, 방과 후 학교 지원(안 제14조) 등은 이미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넷째,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안 제18조), 농어촌학교 학생 지원(안 제20조)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4조 6,241억원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146	-	-	146	-	292	58.4
실태조사 (안 제7조)	353	-	-	353	-	706	141.2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	1.4	1.4	1.4	1.4	1.4	7	1.4
교원 추가배치 (안 제17조)	948,124	871,907	902,301	933,915	966,798	4,623,045	924,609
합 계	948,625	871,909	902,302	934,415	966,800	4,624,050	924,810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초·중등교육법」(제6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농어촌 - 도시지역 간 교육 양극화를 개선하고 농어촌 소멸 방지를 위해 학생·교원·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지원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농어업인 삶의 질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으로 이미 정하고 있으며, 시도별 조례를 통해서도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어 동 제정법은 유사입법 또는 중복입법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26개의 본칙,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본칙(26개 조문)	
제1조(목적)	제14조(방과 후 학교 등)
제2조(정의)	제15조(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 등)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6조(교육환경의 개선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학급담당교원의 배치)
제5조(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18조(농어촌 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9조(교직원 특별임용)
제7조(실태조사)	제20조(농어촌 학교 학생 지원)
제8조(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	제21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9조(시·도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 등)	제22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0조(학교의 설치·운영)	제2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1조(공동학생통학구역 등)	제24조(대학 등의 농어촌인재 우대 채용)
제12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5조(폐교 등)
제13조(농어촌자율학교의 운영)	제26조(조세감면 등)
□ 부칙(2개 조문)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실태조사 및 추진체계 설치(안 제7조~제9조, 제15조)

안 제7조는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교육부 장관 소속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시·도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5조는 집행기구로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프로그램 개발·보급, 소개·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4년마다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농어촌 교육 지원 관련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 ①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 정 안

1.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정책의 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점검

4.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5. 그 밖에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촌 학교 교육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점검

4. 시·도 교육여건에 적합한 농어촌 학교 교육프로그램 내용 개선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 등) ① 교육부장관은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연구 및 성과 분석

2.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학교 우수 운영사례 홍보

3.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4.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교육과정의 연구·개발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농어촌 특성에 맞는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제 정 안

지역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홍보

2.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③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와 관련, 안 제7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 외에도 농어촌 교육 지원 관련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계획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점검을 “교육부장관”의 업무로 보았으나 안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점검’을 “위원회”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동일한 업무를 서로 다른 주체에게 수행하도록 한 점에서 법 적용상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해당 업무의 주체를 일원화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⁴⁾에서는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위원회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위원회는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0조5)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등’6)을 두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간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있음.7)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6) 농어업인삶의질법 제27조에서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7) 행정안전부 또한 같은 의견을 제시함.

나. 학교의 설치·운영(안 제10조)

안 제10조는 농어촌 중 면 단위 지역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원칙적으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인접 면 단위를 병합해 1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중 면 단위 지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설치할 경우 인접 면 단위를 병합하여 1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초등학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 최소한의 교육기관을 보장하여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임.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 또한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2항에서 소규모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한 것은 학령인구가 급감한 지역에까지 모든 학년을 갖춘 일반 학교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최소한의 교육권 보장을 위

해 초등학교 1~2학년만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면 단위 지역 유·초·중·고 설치 현황에 따르면 893개 면에서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들 면에 일괄적으로 고등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 등의 제약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면 단위 지역 유·초·중·고 설치 현황 >

구분	유치원	초	중	고
유·초·중·고 미설치 면 수	64	34	432	893
유·초·중·고 설치 면 수	1,112	1,142	744	283
계	1,176	1,176	1,176	1,176

※ 면 수 출처 : 통계청 인구통계 기준

※ 학교 수 출처 : KEDI 교육통계서비스(분교, 휴교 포함)

※ 교육통계서비스 상 학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자료: 교육부

다만, 제정안에 따를 때 여전히 유치원, 중학교는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최소 432개 면에 중학교를 신설함에 따른 예산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의 설립 및 폐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⁸⁾, 실제로 교육감이 개발사업의 추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 학생 수 변동, 인근학교 학생 배치 여력, 교원수급 계획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설립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⁹⁾. 따라서 면 단위 지역에 학교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 체계와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

교육부는 학교의 설치 및 폐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이고, 각 시·도는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설치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면 단위 1개 이상의 학교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9) 참고자료 ‘초·중·고 신설학교 설립 기준 및 절차’ 참조.

다. 공동학생통학구역 및 교육과정 운영(안 제11조~제12조)

안 제11조는 인접 도시지역 학생의 농어촌 학교 입학 및 전학 교육을 위해 공동으로 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농어업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및 농어촌 지역 외 학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1조(공동학생통학구역 등) ① 농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은 인접 도시지역(농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어촌 학교 입학 및 전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할 학교에 대하여 공동으로 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학생통학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어업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닌 농어촌 지역 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학기 이상 장기적으로 수학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업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¹⁰⁾에 따라 특정 지역 거주 취학 대상자가 특정한 초등학교에 가도록 지정해 놓은 구역이고,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 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동통학구역은 특정 지역 내 학생이 복수의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설정한 통학구역을 지칭함¹¹⁾).

안 제11조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도 농어촌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원교육 등 특화된 교육과정과 쾌적한 교육환경 및 소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학교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음.

안 제12조제2항 또한 유사한 취지에서 농어촌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자원을 도시 학생과 공유함으로써, 도시 학생에게는 전원형 체험 및 대안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학교에는 학생 유입을 통해 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11) 교육부 학구도안내서비스 홈페이지(schoolzone.emac.kr) 참조.

라. 농어촌자율학교의 운영(안 제13조)

안 제13조는 각 시·도에 각급 학교별로 자율학교를 1개 이상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농어촌자율학교의 운영) 교육감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1개 이상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¹²⁾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기존에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농어촌 학교 등이 지정되어 왔음. 참고로, 농어촌 학교 가운데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개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농어촌 학교 자율학교 지정 현황 ＞

(단위: 개교)

구 분	농어촌학교 (자율 비지정)			농어촌학교 (자율 지정)			소 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서 울	-	-	-	-	-	-	-	-	-
부 산	19	8	3	3	-	2	22	8	5
대 구	39	22	11	1	1	1	40	23	12
인 천	13	4	2	18	10	11	31	14	13
광 주	-	-	-	-	-	-	-	-	-
대 전	-	-	-	-	-	-	-	-	-
울 산	29	11	11	3	3	1	32	14	12
세 종	19	7	3	-	-	1	19	7	4
강 원	232	104	58	2	1	12	234	105	70
경 기	191	81	51	185	78	45	376	159	96
충 남	258	93	35	60	37	36	318	130	71
충 북	162	75	17	13	5	23	175	80	40
전 남	340	200	92	3	-	-	343	200	92
전 북	234	118	60	7	4	3	241	122	63
경 남	118	124	63	191	20	30	309	144	93
경 북	333	171	76	4	2	14	337	173	90
제 주	70	26	12	-	1	-	70	27	12
합 계	2,057	1,044	494	490	162	179	2,547	1,206	673

※ '25.3. 기준
자료: 교육부

제정안은 농어촌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인정되던 것을 시·도별로 학교급마다 1개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농어촌학교 중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학교모델을 확보하고 이를 확산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마. 방과후 학교 등(안 제14조)

안 제14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 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촌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4조(방과 후 학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기와 적성의 계발, 예술 및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초등학교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돌봄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농어촌 학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취지로, 해당 지역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와 특기·적성 계발, 학부모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그러나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늘봄학교)은 농어촌 지역에 국한된 제도가 아닌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인력 및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도시 지역 저소득층 학생 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관련하여 2020년에 전국 모든 학교의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¹³⁾된 바 있으나, 교육부측 답변에 따르면 당시

현장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사례가 있음. 또한, 현재 돌봄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임.

이처럼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따라 전국적인 법적 기반을 우선 마련한 이후,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차등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3) 법제처 공고번호 제2020-178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23조의2(방과후학교) ①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u> <u>②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u> <u>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u> <u>④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바. 교부금 특별지원(안 제16조)

안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6조(교육환경의 개선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은 농어촌 지역이 학생 수 감소, 낙후된 교육시설, 교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고려하여 특별지원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 「도서·벽지 교육진흥법」¹⁴⁾은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지출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교부금으로 집행되고 있음.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¹⁵⁾에서는 기준재정수요(지자체가 교

14)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教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教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인 재정 수요액) 산정 시 인구 감소지역 학생 수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일정 수준의 특별지원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2. 학교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라. 삭제 <2020. 10. 20.>		

비고

4의3. 측정항목 제2호다목의 학생경비를 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학생 수의 경우에는 2를 곱하여 산정한다.

사. 학급담당교원 배치 등(안 제17조~제18조)

안 제17조는 농어촌 학교에 학급당 2명의 학급담당교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안 제18조는 농어촌 학교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책 마련과 주거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7조(학급담당교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2명의 학급담당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농어촌 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교육감은 농어촌 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행정업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¹⁶⁾는 학급당 1명씩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을 두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7조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

1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급당 담임교사를 2명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임. 그러나 농어촌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경향이 있고, 해당 지역의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제정안과 같이 농어촌 학교에 교원을 추가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총 4조 6,230억원(연평균 9,246억 900만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학급담당 교원의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인건비	720,670	744,691	769,657	795,606	822,577	3,853,200	770,640
법정부담금	79,319	82,838	86,518	90,366	94,391	433,433	86,687
기본경비	42,697	44,378	46,126	47,943	49,831	230,975	46,195
자산취득비	105,437	-	-	-	-	105,437	21,087
합 계	948,124	871,907	902,301	933,915	966,798	4,623,045	924,6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부는 안 제17조와 관련, 「정부조직법」 제8조제1항17)에 따라 공무원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치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17) 「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한편, 안 제18조는 현행 농어업인삶의질법 제26조¹⁸⁾와 유사한 조문으로, 안 제18조제3항과 관련하여 현행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등¹⁹⁾에 근거해 월 3~5만원의 순회교원수당과 복식수업²⁰⁾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²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도서벽지 근무 교원에 대하여는 지역 등급에 따라 월 3~6만원의 도서·벽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18) 농어업인삶의질법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9)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교원수당) ① 임용권자로부터 겸임근무를 명받아 농어촌학교가 포함된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서 1개 이상의 농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순회교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에게는 월 30,000원의 순회교원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복식수업수당) ① 소규모 농어촌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에게는 월 30,000원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한다.

20) 두 개 이상의 학년을 하나의 학급으로 편성하여 한 명의 교사가 동시에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의 수업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도서·벽지 수당 지급액 >

구 분		가(특지)	나(갑지)	다(을지)	라(병지)
특수지 (도서벽지)	국가공무원 (교원 포함)	60,000	50,000	40,000	30,000
	지방공무원				
서해5도	지방공무원	200,000원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자료: 교육부

아. 농어촌학교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안 제21조~제24조)

안 제21조~제24조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대학입학,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채용 등에서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1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을 특별전형에 의하여 정원의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농어촌 인재(이하 “농어촌인재”라 한다)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농어촌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농어촌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촌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농어촌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농어촌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24조(대학 등의 농어촌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함에 있어 농어촌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안 제21조~제24조는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이 대학 입학, 공무원 임용 등에서 진입 기회를 확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교육 및 고용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있는 인재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다만, 대학입학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²²⁾에 따라 이미 농어촌지역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도 「국가공무원법」²³⁾ 등에 근거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 유사한 제도가 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입법 필요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또한 농어촌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농어촌 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취지는 동의하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 지역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여러 제도가 기 시행 중으로, 농어촌학생

2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2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을 특정하여 일정비율 이상 채용할 경우 수험생 간 역차별 및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자. 조세감면 등(안 제26조)

안 제26조는 농어촌 학교 교원 및 학생의 학부모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6조(조세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 교원 및 학생의 학부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정안은 농어촌 학교 교원 및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나,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고만 하여 별도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조세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지방세 특례를 해당 법률 및 조약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 감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²⁴⁾, 이를 벗어난 감면 규정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24)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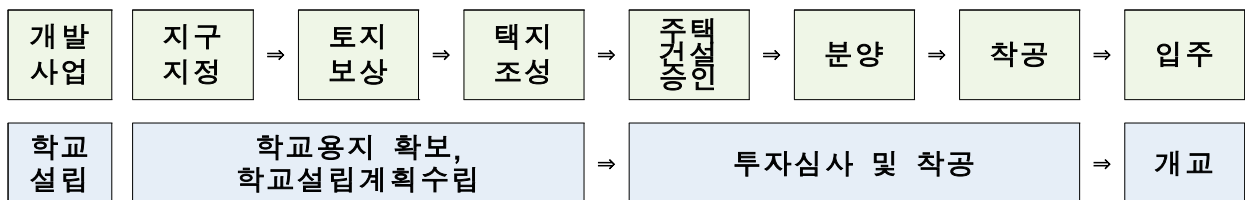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규정 신설은 조세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안 제26조의 조세감면 규정은 단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 실익이 없다면서, 오히려 동 규정 신설로 인해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등 조세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 학교 설립 관련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 「초·중등교육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그 외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 학교 설립 절차(시·도교육감 관장사무)



1) 학교 용지 확보

-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감은 개발사업에 따라 필요한 학교의 종류, 학교용지 규모 및 위치를 시도지사 및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

※ 교육환경영향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에 최종 반영

2) 학교 신설 계획 수립

- 시·도교육감이 개교 3년 이전에 설립규모, 개교시기 등을 재판단하여 실제 설립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학교 설립 계획 수립

※ 개발사업 추이, 학생수 변동, 인근학교 학생 배치 여력, 교원수급 계획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설립 추진 여부 결정

3) 재정투자심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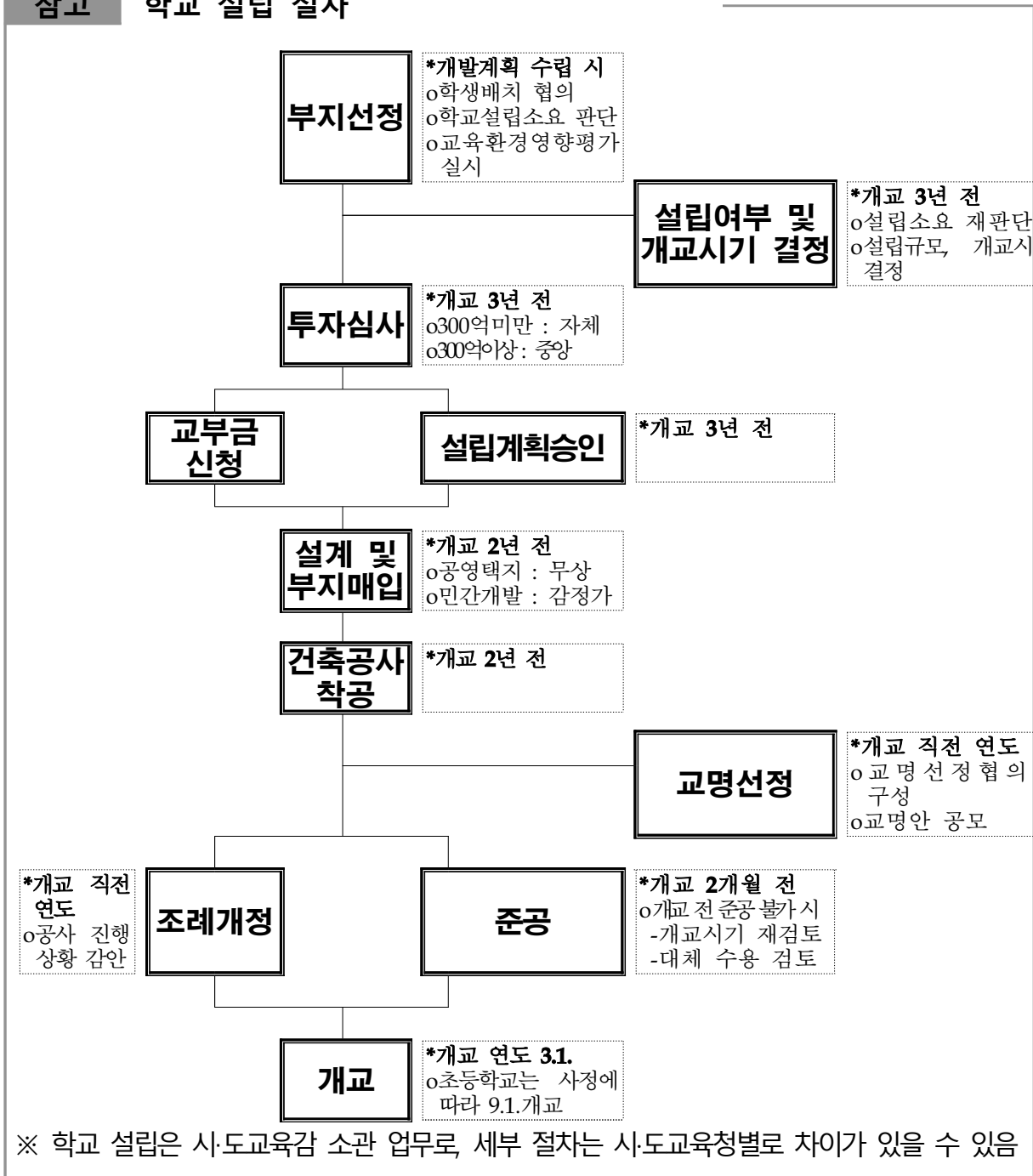
- 시·도 교육감이 학교 신설 계획을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심의 의뢰하고 승인된 경우 사업 추진 및 신설비 교부

※ 교육청 자체투자심사(40억원 이상)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300억원 이상) 실시

4)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설계 및 건축공사 추진

5) 시·도 조례(학교 설치 조례) 개정 및 개교

참고 학교 설립 절차



○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 시 주요 확인·검토 사항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 시 주요 확인·검토 사항

-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예정 세대수 및 입주시기
 -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여부, 공동주택 분양 예정 세대수 및 입주시기 등 확인
 - 입주시기와 개교시기의 적정성 확인
 -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른 유발 추정 학생수
 - 주택유형(공동주택, 임대주택, 오피스텔 등)별 유발 학생수 추정의 적정 여부 확인
 - 유발 학생수 과다 또는 과소인 경우 특이사유 유무 확인
 - 개발사업 지역의 성격 확인(공단, 항만 지역 등, 고립 지역 여부)
 - 학생수 증감 추이
 - 통학구역 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발 학생의 자연 해소 가능성 확인
 - 학교 설립 후 지속 가능성 및 설립 후 소규모화 가능성 확인
 - 통학구역, 인근 학교로 통학 여건
 - 분산배치를 위한 통학구역 조정 가능 여부 확인
 - 학생 분산배치 시 통학 여건(통학 시간, 통학로 유무) 등 확인
 - 인근학교 학급수 및 학생수 현황, 증축 여력
 - 인근학교 과밀 정도 확인 등 배치 여력 확인을 통한 분산 배치 가능성 확인
 - 증축 통한 추가 분산 배치 가능성 확인
 -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 타 사업 대비 부지비 및 건축비 과다여부 확인 및 과다 시 특이사유 확인
 -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 사업 여부 등 확인
- ※ 소규모학교 및 통합운영학교 설립 검토 시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검토할 수 있음
- ① 대규모 개발지구 내 신설학교 개교 후 3년 이내 증축이 필요할 정도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지 여부 확인
 - ②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으로 통학구역 또는 학군 내 학생 분산 배치시 원거리 통학으로 통학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 ③ 소규모학교 및 통합운영학교 설립 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학교운영계획* 유무 확인
- * 소규모학교 운영방안 및 지원사항, 중장기학생배치계획, 등
-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